탄 원 서

한덕수 전 총리 재판 관련 위증 사건

수신 대법원 제1부 귀중
사건번호 2026도15403 (재확인)
피고인 윤석열
탄원인 _____ 연락처 _____ 생년월일: _____
주소 _____

존경하는 대법관님.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에서 1심과 항소심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는 점을 존중하며, 상고심에서도 이미 확인된 사실인정과 형사법의 증명 원칙이 충실히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탄원서를 올립니다. 특정 정치인의 입장을 옹호하기에 앞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거짓 진술을 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가 이 사건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진술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처음부터 계획했는지, 아니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건의 이후에야 계획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특별검사팀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 당시의 실제 의사에 반한다고 주장했으나, 1심과 2심 법원은 그 진술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라고 단정할 만큼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증죄의 판단은 사후에 확인된 객관적 사실과 진술 내용 사이에 불일치가 존재하는지뿐 아니라, 진술자가 당시 자신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증언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결정이 빠르게 전개된 상황에서 누가 어떤 시점에 무슨 계획을 갖고 있었는지는 사후의 추정만으로 쉽게 단정할 수 없는 내면적 사실이기도 합니다.

항소심은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 개최를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과 당시 준비된 문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허위 진술이라고 볼 합리적 의심이 남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곧 피고인의 모든 정책적 선택을 정당화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위증이라는 특정 범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형사법적 결론을 의미합니다.

상고심에서는 사실심의 자유심증에 관한 심사 범위와 법리 적용에 관한 원칙을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재판에서 계엄의 위헌성이나 관련자의 책임이 별도로 논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진술의 위증 여부까지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헤아려 주십시오.

재판부께서는 당시 소집 연락의 시간 순서, 추가 국무위원의 참석 경위, 피고인이 알고 있던 절차적 요건, 질문의 정확한 문맥과 답변의 전체 취지를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어느 한 문장만 분리하여 해석하기보다, 질문을 들은 사람이 이해한 의미와 당시 기억의 불완전성을 평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법정의 진실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동시에 객관적으로 허위임이 증명되지 않은 증언을 위증죄로 처벌하는 일은 다른 증인들의 자유로운 증언과 방어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위증죄는 엄격한 증명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합리적 의심이 남는 경우 무죄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이미 두 차례의 사실심에서 무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상고심에서도 법률이 정한 심리 범위와 증명 원칙에 따라 무죄 판단을 유지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탄원드립니다. 이 사건의 결론이 개인에 대한 정치적 평가가 아니라 형사법의 기본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한 결과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탄원인 _____ (자필 서명 또는 날인)

대법원 제1부 귀중